

계약조건 설명서

1. 공 사 명 :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4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공사

2. 목적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의 조건부 합격 사항 이행을 위한 필수 안전부품 설치.

3. 공사개요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 1) 보조브레이크 설치(과속·역전방지 장치 포함)
- 2) 보조브레이크 보조 제어반 설치
- 3) 핸드레일 속도센서 시스템 설치
- 4) 교체 외 점검이 필요한 개소 점검
(기계실 내부의 메인 구동축, 핸드레일 샤프트, 구동 모터 등)
- 5) 종합 시운전 포함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 핸드레일 속도 센서 작동 확인)

나. 공사대상 에스컬레이터

구 분	호기 명칭	운행 층	용량(Kg)	정격속도 (m/분)	크기	층고 (m)	설치 년도
에스컬레이터	본관-EC1	1→B1	3000인/H	19.8	600(2스텝)	5.2	2004
	본관-EC2	B1→1	3000인/H	19.8	600(2스텝)	5.2	2004
	본관-EC3	2→1	3000인/H	19.8	600(2스텝)	5.2	2004
	본관-EC4	1→2	3000인/H	19.8	600(2스텝)	5.2	2004

4. 입찰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공인 KC 안전인증을 획득한 정밀안전장치 제품을
공급 및 시공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조사 순정부품공급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종합병원 이상에 단일공사 1억원 이상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 보유업체
마. 입찰 안내 공고일 기준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5. 공사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하자 보증 및 유지보수

- 가.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수시검사 합격일이 아닌 준공일 기준)
- 나. 보증기간 내 제품 및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다. 시공 제품의 결함이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검사에서 지적(보완 또는 불합격)을 받을 경우, 시공사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및 재검사를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7. 공사범위

- 가. 용어의 정리 : 영남대학교의료원은 “발주처, 발주자, 의료원, 갑, 감독관” 등으로 칭하며 낙찰된 주관 계약사는 “계약사, 원도급자, 도급자, 계약자, 시공사, 을” 등으로 칭한다. 이하 계약조건(현장)설명서는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나. 일반사항

-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착공일은 본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본 공사의 공사 내역 작성 및 시공 기준은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 관계법의 유권해석, 감독관 지시사항 등의 순으로 한다.
- 3)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시방, 도면, 현장설명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조사하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입찰자는 현장설명서의 모든 사항의 정확성을 인지하고 작성된 것으로 한다.
- 4) 입찰자는 견적에 영향을 미칠 제반 여건 또는 공사 수행 및 완공에 필요한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수단 공사장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계약 후 공사의 수행과 완공에 영향을 미칠 위험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 5) 입찰 참가 예정자의 요청 시 내역의 품목 및 규격, 수량은 제공할 수 있지만 입찰 시 참고용으로 하며, 반드시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여 물량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공된 공내역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에 기재된 사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내역서상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누락, 수량 부족 등 기타 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책임 시공하며, 일체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6) 입찰 참가 예정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 발생 시 사전 발주처에 현장 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한다.(지정기간 경과 이후에 설계도서의 오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계약조건(현장) 설명서는 공사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되며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8) 입찰내역 작성 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관련 입찰 도서에 기록된 사항은 전부 내역 산출에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9) 입찰 참가 예정자는 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각종 기자재에 대한 제작사를 면밀히 확인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며, 계약자의 실수로 인한 기자재 적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기자재 적용의 오류 발생 시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자재를 변경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10) 작업 중 현장 상주 인원은 의료원에서 지정한 인원(현장대리인)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고 공사 중 시공 기술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목적물의 품질관리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자에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즉시 이에 따른다.
- 11) 계약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4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인접 지역 및 영남이공대학교 또는 의료원 관계자와 분쟁이 없도록 하고 인접지 역에 대한 상호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책임지고 조속히 처리한다.
- 12) 계약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4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공사에 따른 병원 이용객 및 환자, 교·직원의 기존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기존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분쟁, 민원 등이 발생할 때 계약자 부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책임지고 조속히 처리한다.
- 13) 계약자는 공사 차량(자재반입·반출, 폐기물 처리 등)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요원 배치 및 자재적재 가설 울타리 및 보양 등을 계획하고 내역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 14) 민원 발생 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계약자가 주관하여 적극 민원을 해결하며, 민원 해결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조치한다.
- 15) 지체상금률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 요청 지연일수를 제외한 지체일수 당 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 16)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관련법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주처에서 정한 요율로 한다.
- 17) 계약자는 계약(도급)내역을 공정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18) 입찰참가업체는 병원이용객의 동선계획, 공기단축 방법 등을 충분히 계획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절대공기 확정에 따른 주, 야간 및 공휴일 등 돌관공사 진행 필요함)

- 19) 작업 중 민원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 민원 내용을 구두보고 하며,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작업 재개 지시받은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 20) 공사 관련 모든 차량은 발주처가 정한 주차료를 주차관리소에 납부한다.
- 21) 계약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4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공사시 진료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부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 22)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지급 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며, 사용승인 후 준공 정산 시 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 부족에 따른 금액은 발주처에서 차감 후 정산 지급한다.
 - 가) 정산 기준금액은 관련법에 의거 공사비 효율로 하며, 계약자는 발주처(또는 설계 사무소)에 기준 금액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요구에 따른 책임은 낙찰 받은 계약자에 있다.
 - 나) 공사 계약조건의 제출 증빙 자료는 발주처에서 위 공사명을 별도 명기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 공사임을 관련 부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한다.
- 23)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관련 서류의 변조 등 위법사항으로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공통 시방

- 1)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정밀 시공한다.
- 2) 영남대학교의료원 내, 외부 이용객의 이동통로를 위한 안전 및 분진 시설물 설치필요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계약자 부담으로 안전 및 분진 누출이 없는 가설물을 설치한다.
- 3) 기존 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조치한다.(소요비용 : 계약자 부담 책임 시공)
 - 가) 작업 범위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이설 및 철거를 포함하며, 철거 후 재시공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한다.
 - 나) 기존 관련실의 운영 및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 관련 부서의 요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단계별 분리 시공한다.
 - 다) 작업 범위 내 기존 시설물 이설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지정 장소에 이설하며, 이설 중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라)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 손괴 또는 훼손 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 4) 철거공사
 - 가) 현장설명 참가 업체는 기존 시설물 (구축물, 구조체 매설물 등) 철거부분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며, 설계도서상 명기되지 않은 철

거 필요 부분의 철거 및 이설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도 포함한다.

- 나) 공사장 폐기물 처리는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범위 내의 건설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 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5) 착공 전 시공 도면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6) 작업 중 자재 반입 및 작업 차량의 통행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파손이 없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한다.
 - 7) 계약자는 공사용 전기 사용 시 관련법에 따라 시설하며, 발주처 승인받아 사용한다.
 - 8) 사용 자재는 정비대상인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사(OTIS) 표준품을 사용하며, 표준품이 없을 시 견본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9) 계약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도서(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도면상 오기, 누락 등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조치한다. (단, 도면상 누락분 발생 시 계약자는 시공을 감안하여 필요부 보완 보강을 포함토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 및 소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10) 착공 전 기존 시설물의 현장을 숙지하여 장애물 발견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며, 승인을 받아 시공했어도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
 - 11)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12)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품 및 재료는 KC인증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13)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의 시험은 시방서 규정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뢰원 요청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항 일체는 계약자부담으로 처리한다.
 - 14) 계약자는 본 작업의 준공을 받고 실제 작업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서(도면, 계산서 외 발주처가 정한 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발주처에 접수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한다.** (준공도서 항목 및 수량은 별도로 지정한다.)
 - 15) 계약자는 각 공사의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대지를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제출한다.
 - 16) 현장설명 시 제공되는 모든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 중, 계약조건 설명서 내용과 상이 하거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 질의 기간 내에 발주처에 문의한다.
 - 17)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으로 건축·기계·전기 외 등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타 공사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공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18) 입찰 내역 작성 시 모든 공종은 시공 범위 및 사양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라. 안전관리

- 1) 공사 전 투입 인원에는 감독관에게 인적 사항을 보고하고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2) 안전기준에 위반된 안전시설 부적격 안전 장구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한 작업자 적발 시 즉시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 3)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용 승인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4)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한다.
- 5)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료원 이용객, 교직원 의료원 통과 차량 및 인원)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진다.
- 6) 계약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가설울타리 또는 소음·분진 등에 대한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병원은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장소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7) 공사개요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의료원에서 정한 재질 및 규격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마. 기타 사항

- 1) 현장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은 공사 일반 시방 및 통상 관례에 준용한다.
- 2) 교통소통 및 이용객 불편 해소는 영남대학교의료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선 조치 후 진행한다.
- 3) 현장 내 통신은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연락을 금지한다.
- 4) 계약자는 지정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간·야간 병행공사를 진행하며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발주처 및 감독관의 공사 중지 지시가 있을 때 즉시 공사를 중단한다. 공사기간 내 미시공으로 인한 진료차질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설계변경

-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 부담하며, 이외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시공 10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2)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선 시공분은 지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시 내용, 지시 도서(변경전, 후 도면, 공사비 증감내역)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발주처의 승인 없는 설계변경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변경 시공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설계변경 내용(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명기 포함)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 내역서

- 4) 설계 변경 단가 산정 기준

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단,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규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액 이하로 발주처와 시공사의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상호 이견 발생 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합의한다. 자문기관 선정은 발주처에서 2개소 이상, 시공사에서 2개소 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며, 자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5) 계약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에스컬레이터(4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공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계법령 및 허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처로부터 관련법 및 시공에 따른 서류 요구 시 즉시 제출하며, 자료 불충분 및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6) 도면, 시방, 현장 설명 시 누락된 부분이라도 공사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 지시로 계약자가 선 시공한다. 선 시공분은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작업 내용

- 1) 보조브레이크 설치(과속·역전방지 장치 포함)

상부 기계실 내 메인 구동축 디스크·패드 장치 설치, 라이닝 간격 및 법정 제동력 간격 및 법정 제동력 정밀 세팅, 과속·역회전 방지용 속도 감지기 및 방향 센서 신설(중심축 정렬 및 수평 조정 포함)

- 2) 보조브레이크 보조 제어반 설치

상부 기계실 내 보조 제어반 신설 장착 및 연동 제어 신호선 결선·배선작업

- 3) 핸드레일 속도센서 시스템 설치

핸드레일 구동 부위 속도 이상 감지(HSD) 센서 설치 및 정밀 세팅
(디딤판 대비 속도 차 15% 이상, 2~15초 지속시 작동)

- 4) 교체 외 점검이 필요한 개소 점검

기계실 내부 메인 구동축, 핸드레일 샤프트, 구동 모터 등 주요 구동 부품의 정밀 상태 점검 및 정렬 상태 확인

- 5) 종합 시운전 포함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 핸드레일 속도 센서 작동 확인)

설치 완료 후 보조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 장치, 핸드레일 속도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실물 작동 시험(종합 시운전) 수행

6) 수시검사 수검 포함

가) 본 공사에 포함된 정밀안전검사 대상 설치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수시검사 신청 및 수검 등 일체의 대관 업무는 "계약자(공사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기간 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공사 준공 예정일 전까지 반드시 '최종 합격'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 기간 내 수시검사 합격증(검사결과서)을 제출하는 것을 본 공사의 준공 조건으로 한다.

다) 수시검사와 관련된 공인 검사 수수료, 필증 발급비 및 대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공사 도급 금액(계약 금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정산이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 내에 수시검사 합격 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불합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지체상금 부과 등) 및 재검사 비용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점검 내용

- 1) 구동기 및 기계실 점검
- 2) 주행 구역 및 외관 점검
- 3) 핸드 레일 시스템 점검
- 4) 전기 안전 회로 점검
- 5) 기타 필요한 부분 점검